

#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

**제2조(지원대상)**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
2. 개발제한구역(이하 “구역”이라 한다)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·의료·금융·문화 등 편의지원사업(이하 “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”이라 한다)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**제3조(시행기관)**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이 시행한다.

**제4조(지원기준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·도지사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·여가녹지·경관·토담길·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·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(이하 “환경·문화사업”이라 한다)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신청하여야 하고,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사업 추진단계,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영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·하수도관,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⑥ 삭제

**제5조(추진절차)** 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, 시·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.

**제5조의2(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)** ① 시·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,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6조(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)**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계획내용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다.

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·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,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)** 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서는 일반·공통적 사항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2. 사업목적 및 개요

가. 일반·공통적 부분 : 사업계획의 목적과 개요

나. 사업별 세부내용 : 단위사업의 목적과 개요

3.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: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구역내 거주 주민 현황, 지역의 자연·지리적 및 인문·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것.

4.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

가. 일반·공통사항 : 단위사업의 총괄표, 사업의 선정경위,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등

나.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: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, 추진일정 및 경위, 사업내용, 투자계획, 사업의 파급·기대효과 등[이 경우 단위사업별로 선정주체(주민발의 또는 요청, 행정관청의 요구 등)를 표기하고,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각각 전체물량과 당해년도 물량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]

5.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: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점검대책 등을 기술하고,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, 주민만족도 조사결과, 사업설명회 개최, 자문위 운영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경·문화사업 절차 등)** ① 환경·문화사업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절차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·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「건축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원사업,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**제9조(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)** ① 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거주세대(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)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공동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③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방법, 자격심사,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### **제3장 주민참여**

**제10조(주민제안 등)** ① 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,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,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,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주민참여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### **제4장 평가위원회**

**제12조(평가위원회의 설치·구성)** ①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13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평가
2. 환경·문화사업의 조사·평가
3. 주민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에 주민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4조(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)** ① 위원장은 제13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15조(수당의 지급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사후관리

**제16조(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)**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사업계획의 변경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 지원한 시·군

· 구, 시·도, 권역별 전국 순위로 순차적으로 정한다.

③ 사업을 폐지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**제17조의2(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,

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

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·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.

**제19조(사후평가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·선정,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등 조치를, 예산집행 부진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제6장 행정사항

**제20조(자료제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21조(회계자료 보관 등)**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·회계 관련 서류를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지도·점검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·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,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,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·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**제23조(재검토기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361호, 2023. 2. 28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○ 기본교부액(70%)

세부항목		산정식	점수비중
1	개발제한구역 면적	전국 면적 비율	20
2	구역내 주민수	전국 구역내 주민수 비율	20
3	부담금	시도징수액/시도부과액+ 시도징수액/전체징수액	30

○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 평가(10%)

평가항목		평가지표	점수기준			비중	
			상	중	하	점수	계
사업 계획	사업선정	①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실적	2	1	1	2	4
	추진계획	② 수혜 주민수 및 비율	2	1	1	2	
사업 집행	추진실적	③ 실적보고서 평가	4	2	1	4	6
		④ 주민만족도 수준	2	1	1	2	

○ 구역관리 실태(20%)

평가항목		평가지표	점수기준	비중
구역 관리 실태	현장조치	① 현장조치건수/적발건수+ 시·도 현장조치건수/전체 현장조치건수	① × 4	4
	시정명령 (불법행위)	② 시정건수/적발건수+ 시·도 시정건수/전체 시정건수	② × 6	6
	이행강제금	③ 징수건수/부과건수+ 시·도 징수건수/전체 징수건수	③ × 6	6
	철거실적	④ 당해 연도 철거건수/총 불법시설물 건수+ 불법 건축물발생 건수/총 건축물 수	④ × 4	4

※ 각 항목의 교부액 : 실적 비율(80%)과 건수 비중(20%)으로 구분하여 합산

○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 검토사항

<사업계획>

- 사업선정

- ① 사업우선순위를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
- ②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주민열람 또는 설명회 등을 거쳤는지 여부

- 추진계획

- ③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이 정확한지 여부  
(총투자규모가 표기되어 있는지, 기투입액이 정확한지 등)
- ④ 시·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여부
- ⑤ 수혜주민수 및 비율(수혜주민수/구역주민수)을 참고하여 상·중·하로 분류

<사업집행>

- 추진실적

- ⑥ 본예산에 80%이상 반영시 상, 100%이상 상반기 반영시 중
- ⑦ 전년도 예산집행률을 상·중·하로 분류.  
실집행률 90%이상 상, 80%이상 중, 80%미만은 하로 분류
- ⑧ 전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실적
- ⑨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0%이상 상, 80%이상 중, 80%미만은 하로 분류

○ 사업종류별 우선순위 판단기준

① 도로 등 기반시설

- 영 별표 1 제5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2호의 공공용시설보다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검토

\* 공공용시설의 서비스 범위 및 구역훼손면적 확대 우려

② 복지회관(영 별표 1 제5호 주민공동이용시설) 등

- 복지회관, 어린이집 등은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, 주민센터 등은 행정안전부, 도서관, 체육회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여부 등을 검토

※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것은 우대하되, 별도의 협의없이 타 사업과 중복신청한 사업은 배제

③ 소하천 및 구거

-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, 방재목적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구역 주민 현안사업인지 등을 검토
- 용·배수로는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인지 검토

④ 오수처리시설 등

- 환경부의 지원사업(생태습지 조성사업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)인지 검토

⑤ 그 밖에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우선선정대상에서 제외

※ 다만, 이미 지원받은 시설이나 장래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·도의 검토의견을 달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

⑥ 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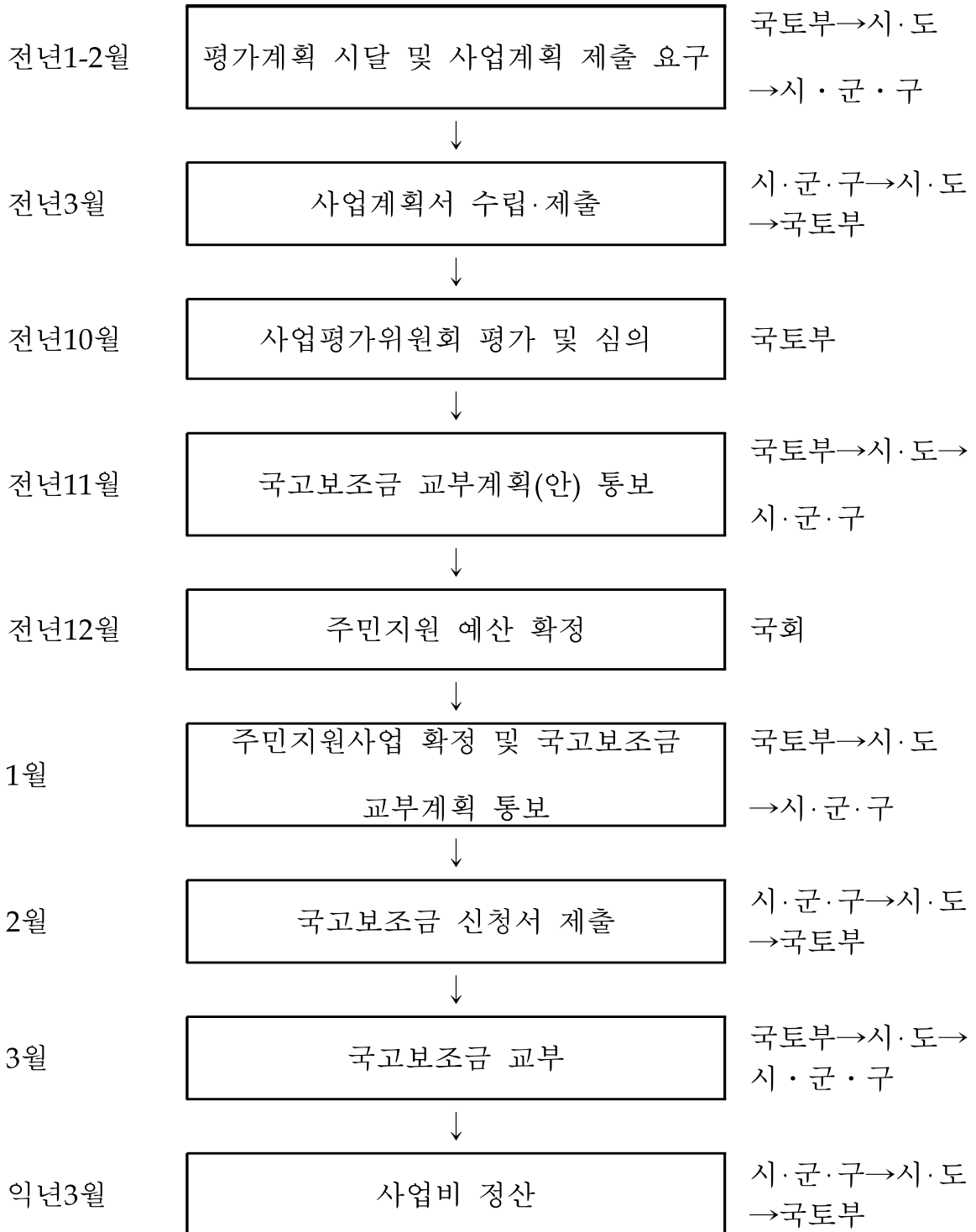
- 대규모 공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소화가 어렵고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, 우선순위를 후위로 배치

※ 다만,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과 국유 매수토지를 활용한 여가녹지 조성 사업,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정

⑦ 소득증대사업은 마을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인정

⑧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가급적 우선순위를 인정

**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** (제5조제1항관련)



### 00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

관리 번호	안양시	2012-01		관 리	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)	
				책임자	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)	
사 업 명				사업장소		
착 공 일				상호 (명칭)		
준 공 일				등 록 번 호		
준 공 일				대 표 자		
준 공 일				소 재 지		
사 업 내 용 (사업비포함)		(사업계획)		추진결과 (공정율 %)	월별	공정율
그 밖의 참고사항		(변경사항)				

(뒷면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		집행액	집행율 (%)	비 고
	소계	국비	지방비			
1월						
2월						
3월						
4월						
5월						
6월						
7월						
8월						
9월						
10월						
11월						
12월						

### **00년 0월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서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국고교부액	국 고 집행액	국 고 이월액 (사유)	국 고 불용액 (사유)	지방비 편성액	지방비 집행액	지방비 이월액	지방비 불용액
계								
○○시								
○○군								
·								
·								

※ 증빙자료 별첨

특별자치도지사  
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

**00년도 주민지원사업 정산내역서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국고교부액	집행액	이월액 (사유)	불용액 (사유)	집행잔액	집행·이월내역
계						○ 집행액 내역  ○ 이월액 내역
○○시						
○○군						
.						
.						

※ 증빙자료 별첨
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#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서

(사업명 표기)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개요 :
- 사업비 :      천원(국비           , 지방비           )
- 사업기간 :      ~
- 추진상황(핵심만 간단히)
  - '00.00. 실시설계용역 완료
  - '00.00. 사업착공
  - '00.00. 사업준공

## 2. 연차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전체 (사업비)		○○년도 (시행)		○○년도 (준공)		잔액	
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	국비	지방비

## 3. 집행잔액 발생사유

#### 4. 집행잔액 사용 주민지원사업

○ 집행잔액을 사용한(또는 사용할) 주민지원사업의 개요

- 사업명 :

- 사업목적 :

- 사업내용 :

- 총사업비 : ○○○천원(국비○○, 지방비○○)

※ 국비기준 : 기시행○○, 금회○○, 초과액○○, 장래○○)

- 사용조건 : 초과액 추가집행 가능 사유 (간단히)

○ 집행잔액 사용명세서(집행액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집행잔액	회계연도 집행액 (또는 집행계획)
계		
국비		
지방비		

#### 5. 기타(증빙 자료)

○ 초과액 발생 사업에 대한 e-호조 사용명세서

※ e-호조에서 정산자료 출력 후 담당자 원본대조필(서명)한 스캔 첨부

## 6. 위치도



## 7. 현황사진



공사 전 · 후 사진